

인천지방법원 2021. 3. 11 선고 2020가단24407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펌진화

담당변호사 장주동

피 고 B

변론 종결 2021. 2. 18

판결 선고 2021. 3. 11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. 3. 4.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유권 이
전등기 절차를 이 행 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김태환

별지